

군포시의회 공고 제2023-46호

##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26일

### 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3년 10월 30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15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softdad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#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신금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	
번호	

발의연월일 : 2023. 10. .

발 의 자 : 신금자, 이길호, 신경원,  
김귀근, 이우천, 이훈미,  
이동한, 박상현, 이혜승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(2023. 3. 21. 공포, 2023. 9. 22. 시행)에 따라, 군포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교섭단체의 구성 등 (안 제3조)
- 나. 교섭단체의 기능 (안 제4조)
- 다.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(안 제5조)

## 3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의 2

## 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의2에 따라 군포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교섭단체”란 군포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군포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(이하 “대표의원”이라 한다)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군포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

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능)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
2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
3.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
4.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·협력
5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지원)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교섭단체 소속 의원 명부

교섭단체 명칭:

구성연월일:

대표의원

소속 정당	의원 명	서 명

소속 의원 명부

연 번	소속 정당	의원 성명	서 명	비 고

년 월 일

대표의원

(인 또는 서명)

군포시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## 교섭단체 명칭(대표의원) 변경 보고

「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(대표의원)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### 변경사항

구분	당초	변경

※ “구분”란에는 교섭단체의 “명칭 변경” 또는 “대표의원 변경” 등을 기재

### 소속 의원 명부

연번	소속 정당	의원 성명	서명	비고

년 월 일

대표의원

(인 또는 서명)

군포시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## 교섭단체 소속 의원 이동(정당 변경) 보고

「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이동(정당 변경)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### □ 이동

대상 의원		변경 사항			비고
소속정당	의원명	일자	내용*	사유**	

\* 변경 사항 중 “내용”란에는 “가입”, “탈퇴” 등을 기재

\*\* 변경 사항 중 “사유”란에는 “당적 취득”, “의원직 상실” 등을 기재

### □ 정당 변경

의원성명	정당 변경 사항			비고
	당초 정당명	변경 정당명	변경 일자	

년 월 일

대표의원

(인 또는 서명)

군포시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

## 당적 취득(소속 정당 변경)보고

「군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당적 취득(소속 정당 변경)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### 당적 취득

의원 성명	당적 취득사항		비 고
	취득한 정당명	취득일자	

### 소속 정당 변경

의원성명	정당 변경 사항			비 고
	당초 정당명	변경 정당명	변경일자	

년    월    일

군포시의회 의원

(인 또는 서명)

군포시의회 의장 귀하